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냉천초등학교

내 용

1. 하자보수보증서 징구 부적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5901호, 시행 2020.10.1.)」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따르면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 물품의 경우 계약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현금을 확보하거나,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냉천초등학교에서는 <표1>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액을 과소 산정하였으며, <표2>와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증권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 하자보수보증금률 부적정 현황

건명	계약방법	계약일	계약금액	적정 요율	하자보수보증금액
다목적체육관 관급자재(금속계좌) 구매	3자단가	2021.11.29.	44,126,200원	5% (2022.5.1. 이전 계약건)	1,323,786원 (3%)

<표2>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증권 미징구 내역

건명	계약금액	납품검사일	하자책임기간	성능보증증권
다목적체육관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42,609,770원	2022.6.1.	2022.12.2.~2024.12.1.	미징구

2. 용역 손해배상공제증서 미징구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및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따르면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 시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냉천초등학교에서는 <표3>과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손해배상공제증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3> 용역 손해배상공제증서 미징구 내역

건명	계약일	계약금액	착수일	완수일	공제증서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사업변경에 따른 설계(건축) 용역	2021.2.18.	19,800,000원	2021.2.19.	2021.6.10.	미징구

[조치할 사항]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오니, 냉천초등학교장은 앞으로 관련 업무 처리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